



대구대학교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의 산·학교류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지역금융의 발전과 지역민에 대한 금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유도하는 한편 지역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과 공동의 이해 증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 나. 대구대학교 재학생의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 가정 주부 및 그 자녀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라. 초·중등 학생의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지역금융의 발전과 금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약이행) 양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고 세부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010년 4월 27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홍덕률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대구지원장 김동건